

정부 부처간 식품안전 관련 법률 용어의 정의 분석

오상석
이화여자대학교
사)한국식품안전연구원
2017. 07. 28

목차

I. 현황

II. 용어 정의 분석

III. 요약

1. 현황

식품안전

정의

사람에게 **해가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

1950년대

FDA에서의 정의

“ Reasonable Certainty of No Harm”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이후 식품 안전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 졌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지난한 노력은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 이란?’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있다.

식품위생

(식품위생법 제2조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EU 식품위생법 제2조 1 (a))

"**식품위생**"은 위해를 관리하고 의도된 사용에 따라 사람이 식품을 섭취할 때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과 조치들을 말한다.

위해

(식품위생법 제2조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EU 일반식품법 제3조 14)

“**위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을 지닌 식품 및 사료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 또는 그 식품의 상태를 말한다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부처 관련법

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안전기본법(2008)
2. 식품위생법(1962)
3.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2003)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2009)
5.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2016)

보건복지부

6. 공중위생 관리법 (1999)

법무부/보건복지부

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농림축산식품부

8. 축산물위생 관리법
9. 식품산업 진흥법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 식생활 교육지원법
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3. 인삼 산업법
14. 소금산업 진흥법
15. 양곡관리법
16. 친환경 농업육성법
17.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18.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19. 낙농진흥법
20. 사료관리법 (1963)
21.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22. 김치산업 진흥법
23. 외식산업 진흥법
2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

26. 학교급식법

기획재정부

27. 주세법

환경부

28. 먹는물
관리법

해양수산부

29.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30. 제조물
책임법 (P/L법)

II. 용어의 정의

- ▶ 가. 식품의 정의

식품

식품안전 기본법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산업 진흥법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미국에서 '식품'의 정의>

식품 "food" 은

- (1)사람이나 동물의 음료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 (2)껌류 또는
- (3)이에 사용되는 부재료를 의미한다

<EU에서 '식품'의 정의>

'식품'(또는'식료품')은

전체 또는 부분 가공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이 의도적 또는 합리적으로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물질과 생산물을 의미한다.

나. 위해의 정의

식품안전 기본법	"위해성평가"란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 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EU 일반식품법 제3조 14)

"위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을 지닌 식품 및 사료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 또는 그 식품의 상태를 말한다

환경부 유해물질관리법

제 2조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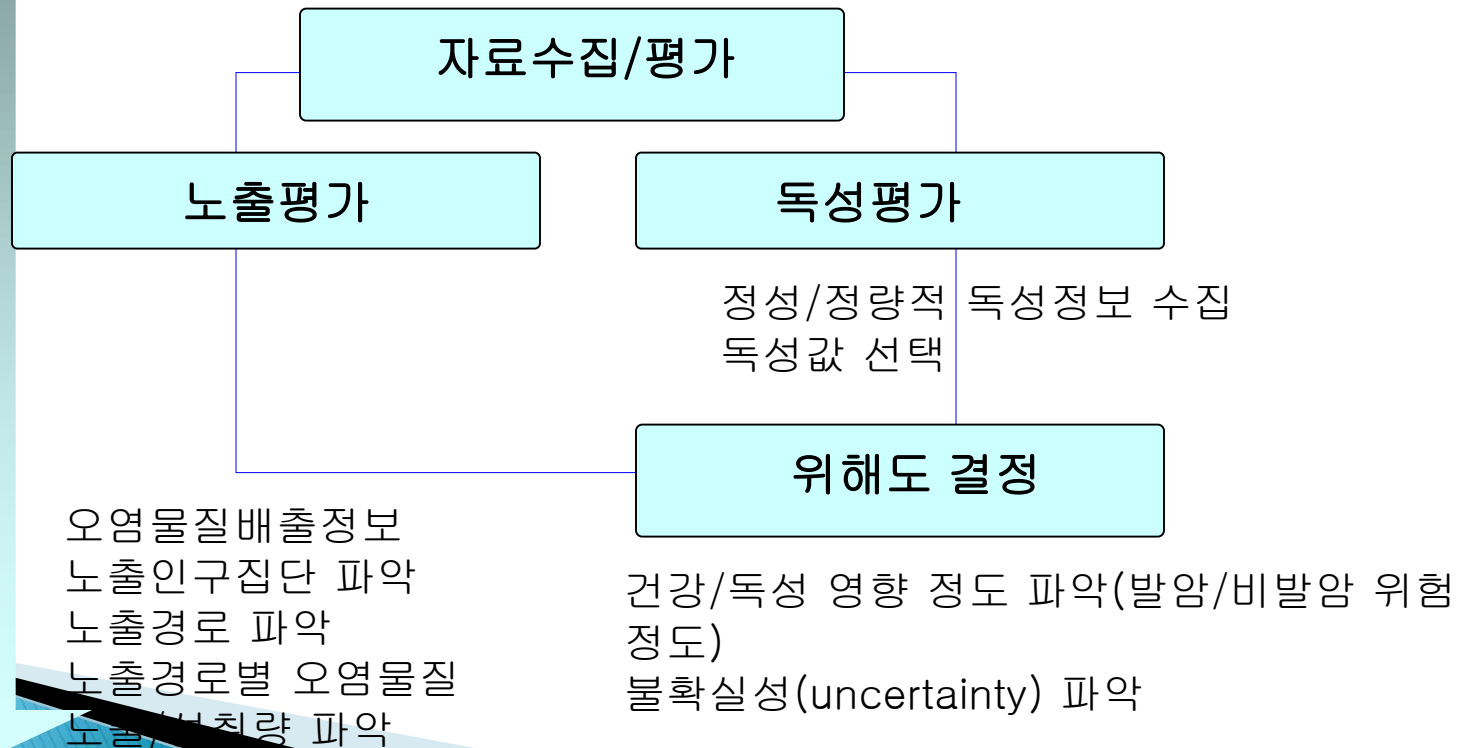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Risk Assessment (위해성 평가)

- 1) 유해성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 2) 용량-반응 평가 (Dose-Response), 유해성 결정 (WHO)
- 3) 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 4) 위해도 결정 (Risk characterization)



법무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
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다류

- ▶ 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

- ▶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

- ▶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

- ▶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

- ▶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포스파타제가 검출된 경우

6. 식육 및 어육제품

- ▶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납이 3ppm 이상 함유된 경우

7. 청량음료수

- ▶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8. 장류

- ▶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5ppm이상 함유된 경우

9. 주류

- ▶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메칠알코올이 1ml당 1mg이상 함유된 경우

10. 분말 청량음료

- ▶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수용상태에서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다. 표시의 정의

식품위생법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라. 영업자 및 사업자의 정의

<p>식품안전기본법</p>	<p>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2011.7.21.>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수·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식품위생법</p>	<p>"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p>
<p>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p>	<p>"영업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p>
<p>식품산업진흥법</p>	<p>"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소금산업 진흥법</p>	<p>"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사료관리법</p>	<p>"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김치산업진흥 법</p>	<p>"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외식산업진흥 법</p>	<p>"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쌀가공산업육 성 및 쌀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p>	<p>"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제조물 책임법</p>	<p>"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p>

식품관련법

1. 산업 진흥 (생산자)을 위한 법
2.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

사료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목적

사료 관리법

제1조 목적

이법은 사료의 수급안정,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의 목적 (제 1 조)

- ▶ 제1 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목적)
▶ 제1 조 이 법률은 식품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공중 위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하여,

음식에서 기인하는
위생상 위해의 발생을 방지
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확보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위해의 정의

▶ 제2조(정의)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사용된 “위해”

▶ 총 73회 사용

제1조 (목적) HARM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HAZARD

제15조의2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RISK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 HARM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III. 요약

1. 식품안전 정의에 대한 공감대 필요
“사람에게 해가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
2. 식품위생의 정의
우리나라와 EU의 정의 비교
3. 위해
Harm: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
Hazard: HACCP 에서의 hazard 정의
Risk: 위해성
4. 부처별 식품관련법의 목적
5. 식품안전관리 용어의 공감할 수 있는 정의 설정 필요
6. 관심과 투자 필요 (TF team 구성?)

감사합니다!